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 (F-1-5)

발급대상

• 자녀 양육 지원 (임신 또는 돌봄)

결혼이민자 또는 한국인 배우자가 임신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 입국이 필요한 경우 신청일 기준, 자녀가 만 9세가 되는 해의 9월 말까지 초청 가능 (자녀 1명당 1인 (부모 동시 또는 순차 초청 가능), 1명당 최대 2회)

자격

• 한부모 또는 다자녀 (미성년자녀 3명 이상)

신청일 기준, 자녀가 만 12세가 되는 해의 9월 말까지 초청 가능 (자녀 1명당 1인(부모 동시 순차 초청 가능), 초청횟수 제한 없음)

피초청대상

1. 결혼이민자의 부모
2. 결혼이민자의 부모 모두 사망 또는 질병, 고령의 이유로 국내에 입국할 수 없는 경우 민법상 성년인 형제자매 및 전혼관계 출생 자녀 (*다만, 형제자매, 전혼관계 출생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초청 가능)

※ 취학의무 불이행 시 초청 제한

- 자녀가 취학연령에 해당하지만 초청인이 취학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국 가족 초청 제한
- 다만,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또는 상급 학년 진학이 유예(연기)된 경우에는, **연령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초등학교 3학년 9월말(일반) 또는 6학년 9월말(한부모 · 다자녀)까지 초청 가능**

사증 종류 (유효기간/체류기간)

- 단수, 3개월/90일

신청인 구비 서류

1. 비자발급신청서,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3.5x4.5cm 컬러 사진
2. 여권/여권사본 1매
3. 비취업서약서 (대사관 양식)

4. 결혼이민자 가족관계 입증 서류

- 부모
 - ☒ 출생증명서, 입양증명서(양부모), 혼인관계증명서, 해당 증명서 E-Mongolia 출력본
 - ☒ 가족사진
- 형제자매
 - ☒ 결혼이민자 출생증명서, 피초청자 출생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해당 증명서 E-Mongolia 출력본
 - ☒ 가족사진
- 전혼관계 자녀
 - ☒ 출생증명서, 해당 증명서 E-Mongolia 출력본
 - ☒ 가족사진

5. 부모 입국 불가사유 및 입증서류 (해당자)

- 만60세 이상 고령 등의 사유로 입국이 불가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질병 또는 사망 증명서류 (대사관 지정 병원 진단서: 국립외상센터, 국립암센터, 제1, 제2, 제3 종합병원, 인터메드 병원, 그랜드메드 병원, UB송도 병원)

6. 결핵진단서 (대사관 지정 병원에서 발급: 국립외상센터, 제1, 제2, 제3 종합병원, 국립전염병센터, 그랜드메드 병원, UB송도 병원, Gyals 진단센터)

※ 과거 초청인의 초청을 받고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초청인 구비 서류

1. 신분증 사본

2. 초청장 (대사관 양식)

- 신원보증서 (보증기간: 입국한 날로부터 3년, 대사관 양식)
- 불법체류·취업 방지 서약서 (대사관 양식)

3. 국내 가족관계 증명서류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자녀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임신한 경우 임신진단서 또는 산모수첩

※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모든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친양자의 경우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4. 거주지확인서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모두)

5. 자녀가 취학연령인 경우 재학증명서 (해당자)

6. 인도적 사유 입증 서류 (해당자)

- (중증질환) '중증질환(중증난치질환)' 또는 '산정특례' 사실이 기재된 진료비 영수증 등
- (중증장애) 장애인 증명서 등

※ 중증질환 또는 장애

- 결혼이민자, 한국인 배우자, 자녀 중 중증질환 또는 중증장애가 있는 경우
- 장애인 증명서의 '종합장애 정도'란에 '중증장애' 또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 중증장애로 인정

- **초청인이 결혼이민 영주 자격 등록외국인인 경우:** 한국인 배우자의 해당 서류 제출
- **초청인이 한부모 가족인 경우:** 자녀명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전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 초청인 또는 과거 초청인의 초청을 받고 입국한 외국인이 국내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건 종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 본국 가족 초청 가능, 인도적 사유 시 1년 경과 후 초청 가능.